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03. 1. 30	예규 제38호
전면개정	2005. 3. 17	예규 제47호
일부개정	2009. 11. 30	예규 제49호
일부개정	2015. 12. 28	예규 제60호
일부개정	2017. 2. 10	예규 제62호
일부개정	2020. 1. 31	예규 제6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제2조(교육시설)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8>

1. 실내교육장: 영상관, 환등기, 실내용신호기 등
2. 실외교육장: 터널, 횡단보도, 신호기, 경보기,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용 도로 등

제3조(운영시간) ① 교육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일요일과 국경일 및 그 밖의 관공서 휴무일에는 휴관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1. 31>

② 교육장은 하·동절기인 1월, 2월, 8월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 교육장 관련 업무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실내 및 실외 교육시설물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17. 2. 10>

제5조(교육인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30, 2015. 12. 28>

1. 교육장 교육은 1회 교육생을 100명 이하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2. 순회 교육은 유치원, 학교 등에서 요청한 교육방법(반별교육, 방송강의)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제6조(교육비)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제7조(강사위촉)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장에 강사 9명을 두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11. 30, 2015. 12. 28, 2017. 2. 10>

1. 도로교통공단, (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또는 (사)녹색어머니 중앙회에
서 교통안전교사로 위촉을 받거나 교육을 수료한 사람
2. 3년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위촉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8>

1. 이력서(경력포함) 1부
2. 교통안전교사 위촉장 또는 교육수료증 사본 1부
3. 유아교육 자격증(해당자) 사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강사위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강사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0. 1. 31>

1. 강의내용이 불성실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교육 강사 외의 활동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정당한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여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교육장을 이석한 경우

[제목개정 2020. 1. 31]

제9조(위촉기간) 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15. 12. 28>

제10조(강사수당)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15. 12. 28>

제11조(교육운영) 시장은 강사를 교육인원 및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치
하되 운번제로 운영한다. <개정 2009. 11. 30, 2015. 12. 28, 2020. 1. 31>

1. 교육장 교육
 - 가. 60명 이하: 강사 4명 이상
 - 나. 61명 이상 100명 이하: 강사 5명 이상
2. 순회 교육

가. 반별교육: 교실당 강사 1명

나. 방송강의: 강사 2명

다. 강당강의: 교육인원에 맞추어 조정

제12조(소양교육) ① 시장은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09. 11. 30, 2017. 2.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제13조(복무) ① 강사는 별표 1의 어린이 교통교육장 교육일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교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②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 1일전까지 별표 2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1. 30, 2020. 1. 31>

③ 강사는 항상 교육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제14조(복장) 시장은 강사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야 하며 강사는 교육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제15조(설문조사) ① 담당과장은 교육 종료 후 교육생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장 시설물, 강의내용,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30, 2015. 12. 28, 2017. 2. 10>

② 담당과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③ 삭제 <2020. 1. 31>

제16조 삭제 <2020. 1. 31>

부칙 <2005. 3. 17 예규 제47호 전면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30 예규 제49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이 지

안양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관리 지침

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28 예규 제60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10 예규 제62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예규 제67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5. 12. 28>

[별표 2] 삭제 <2015. 12. 28>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12. 28>

어린이 교통교육장 교육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교 대 육 상	오 전					오 후								
	학교명	학급수	인원	인솔자	☎	학교명	학급수	인원	인솔자	☎				
교 인 육 원	구 분		유 치 원 생			초 등 학 생			비 고					
	전일누계	금 일	학교수	학급수	인원	학교수	학급수	인원						
	누 계													
교 내 육 용	구 분		유 치 원 생			초 등 학 생								
			과 목		시 간	과 목		시 간						
	실내교육													
	실외교육													
교 시 관 상 육 설 리 태	실 내 교육장		시설명	비 디 오 프로젝트	OHP기	실내용 신호기	모터카							
	실 외 교육장		시설명	신호기 경보기	교통안전 표 지 판	터 널	차 선	횡단보도	안내판	기 타				
			상 태											
기 타 사 항														
금 일 근 무 자	강 사					보 조 강 사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 12. 28>

근무상황부

구분	강사명	기간 및 시간	용무 및 연락처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 12. 28>

강 사 위 측 대 장

연번	내역		위측일자	위 측 자			비 고
	교육강사	보조강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